

인천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5892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5892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소293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5. 1.

판결 선고 2024. 5. 2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소293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32,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6,52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2. 2.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31725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0머62396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20. 5.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5에 분할하여 2020. 7.부터 2022. 7.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지급한다.

단,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전부 지급받은 후 즉시 인천지방법원 2020카단100534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에게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61,7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내역' 이라 한다).

1	2020. 8. 31.	1,500,000	계좌 이체
2	2020. 9. 1.	500,000	"
3	2020. 10. 21.	1,000,000	"
4	2020. 10. 22.	1,000,000	"
5	2020. 11. 16.	1,700,000	"
6	2020. 12. 2.	600,000	"
7	2020. 12. 7.	1,400,000	"
8	2021. 1. 13.	1,000,000	"
9	2021. 1. 14.	1,000,000	"
10	2021. 2. 24.	2,000,000	"
11	2022. 10. 14.	50,000,000	수표 지급
합계	61,700,000		

다. 한편 피고는 2021. 6.경 이 사건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천지방법원 2021타채529674호로 원고를 채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위 조합에 대한 현금청산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2. 7. 26. 제3채무자인 위 조합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권자로서 6,835,875원을 배당받았다(인천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위 조정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변제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61,7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6,835,87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돈과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조정 원리금은 별지 변제충당표 1 기재와 같이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가

6,963,564원[=50,000,000원-1,102,909원-41,933,527원(원고가 2022. 10. 14.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변제한 50,000,000원은 위 날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02,909원과 잔존 원금 41,933,527원에 충당되고 6,963,564원이 남는다)]을 초과 변제한 것이 된다.

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이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여 공시송달된 점, 원고는 2022. 12. 21. 위 결정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2022.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2022. 10. 14. 50,000,000원을 변제할 당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제외하고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을 계산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2 기재와 같이 49,897,715원(=6,998,298원+42,899,417원)으로 원고가 변제한 50,000,000원에 매우 근접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착오에 의하여 피고에게 6,963,564원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 6,963,564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집행비용 3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32,064원(=6,963,564원-31,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2. 10.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2. 10. 1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위 돈을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리금 중 원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이자 부분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지연손해금에서 아직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리금은 법정충당에 따라 변제되어 모두 소멸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 및 소송비용 4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조정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회경

판사윤정인

판사유성혜

별지